



제 43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촌 빈집 매입·활용 용도에 아이돌봄시설 등 추가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1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촌 빈집 매입·활용 용도에 아이돌봄시설 등 추가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6. 18.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Ⅲ. 검토의견

1. 농어촌 빈집 매입·활용 용도에 아이돌봄시설 등 추가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어촌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① 아이돌봄시설, ② 주민의 문화시설, ③ 생활편의증진시설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 ----- ----- ----- ----- ----- -----.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1. ----- <u>아이돌봄시설·공동이용시설(주민의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한다)</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어촌 빈집을 직접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①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익적 목적”과 ②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생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농어촌정비 관련 법률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은 공동이용시설에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u>공동이용시설</u>”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u>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u>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u>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빈집을 직접 매입·활용하기 위한 용도에는 아이돌봄시설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이 반드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의 매입·활용 목적에 특별히 아이돌봄시설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이돌봄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에서는 2026년 6월에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에 관련한 사항을 개별법으로 분법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7. 6. 17. 시행)을 제정하였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하고 빈집의 매입·활용 주체를 일부 명시한 측면에 차이가 있으나, 빈집의 매입·활용 용도는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동일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7. 6. 17. 시행)
제1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u>시장·군수</u> 또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지방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등”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u>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u>할 수 있다. 1. <u>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u>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

문 의 처
02)6788-5417

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